

## 2025년 성서산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[달서구 성서산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]

성서산단 소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 
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「달서구 성서산단 소규모 사업장  
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 
2025. 8. 20.(수)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8. 5.

### 대 구 광 역 시 장

1. 사 업 명 :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 
(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) ※**사물인터넷 제외**

2. 총사업비 : 840백만원(국비 470백만원, 시비 370백만원)

### 3.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

○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

1)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**달서구 성서산업단지(5차단지 제외)**에 소재  
하는 사업장\*에 한함.

\*성서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제출가능한 사업장

2)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·5종 사업장  
(예산 여건에 따라 1~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)

※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(보일러, 냉  
온수기, 건조시설 등)을 운영하는 자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조합(이  
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·부자재 등을 제공  
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에 따른  
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(중소기업에 한함)는 지원대상에 포함

## ○ (우선지원)

◇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

-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
-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(먼지, SOx, NOx),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
-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
-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
-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
-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 기준을 적용받아,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

## ○ (선정기준)

- 지원대상, 우선순위를 반영한 항목별 평가에 따른 **고득점순으로 선정**

## ○ (지원제외)

- 대기배출시설 신·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
-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
-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(중앙, 지방)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(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)

## ○ (지원조건)

-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
  - ※ 설치 완료 후 3년간 반기별 자가측정(측정대행 포함) 시행 후 자료 제출
-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**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(www.greenlink.or.kr, 이하 “IoT 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(단,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비용은 지원금액에 포함하지 않음)**

## 4. 지원내용 및 금액

### ○ (지원내용)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

- (지원금액)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%(부가가치세 제외)
  - 방지시설 종류·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(붙임 2)

**<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>**

구 분	입자상물질 방지시설	가스상물질 방지시설		조합 및 공동방지시설
		일 반	전기집진기, RCO 등	
설치비	최대 3억원	최대 3억원	최대 6.2억원	최대 8억원
보조금	최대 2.7억원	최대 2.7억원	최대 5.6억원	최대 7.2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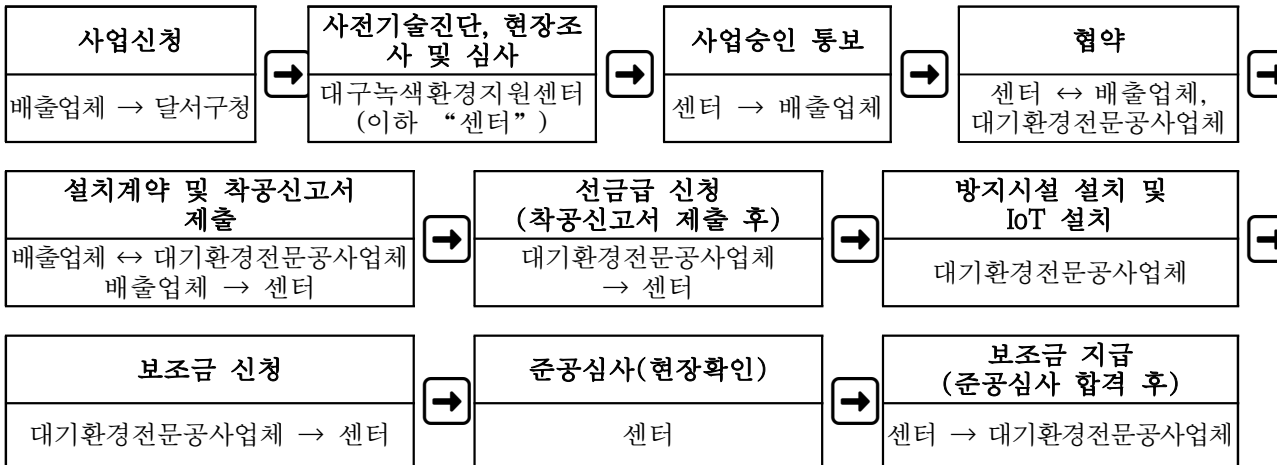
**<비고>**

1.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붙임 2의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(10%)이 증가할 수 있음
2.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, 보조금 한도는 최대 3.6억원이 기준이며, 필요시 설치비 4억원, 보조금 3.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

**5. 세부 지원범위**
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
  - 후드,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.기구류 포함
  -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, 전기공사비 등
  -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,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
  - ※ 단, 증량에 대한 명확한 근거(처리가스량 재산정 등) 제시하는 경우 지원 가능
-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
  - ※ 1개 배출구에 직렬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,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. 이 경우, 신청서 1건으로 작성·제출
  - ※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, 각각 신청서를 작성·제출
- 지원 제외
  - **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비용**
  - 기존 방지시설, 덕트 등 일체 철거비
  - 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

## 6. 사업진행 절차



가. (사업신청)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지원 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를 달서구청에 제출 (구비서류 누락시 현장조사 및 심사 제외)

나. (사전기술진단, 현장조사 및 심사) 보조사업대상(중소기업등), 사업장 여건, 방지시설의 종류, 설계조건, 설계금액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

○ 제출된 서류와 사전기술진단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며, 고득점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1차 선정

- 중도포기 및 사업취소 시 후순위 업체 선정(총득점 60점 미만 제외)

○ 1차 선정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○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(센터)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

-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

※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보완 발생시 재보완 요청 없이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

-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,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함

다. (사업승인)

○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

체결하고, 계약체결 내용(계약서 사본 등)을 센터에 제출

-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
-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

라. (허가 등 신청)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관할기관에 배출시설 변경허가(신고) 신청서 제출하고 허가(신고)를 득하여야함

※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설치·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·제출

마. (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) 배출업체는 공사 착공전 변경사항이 기재된 대기배출시설 허가(신고)증과 계약서, 자부담금 입금확인증, 계약이행보증보험, 개선계획서(최종, 보완사항 포함)을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

바. (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)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

-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'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'(23.6.)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자료는 IoT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함.
-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(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) 및 배출구 설치
-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실시
  -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구 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50% 이내이어야 하며, 전·후단 측정결과 설계에서 제시한 저감효율을 달성하여야 함
  -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% ~ 110%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
  - 백연이 발생하지 않고(0℃ 기준), 복합악취 희석배수 300배이내를 만족하여야 함 (섬유염색업종 및 악취민원 발생사업장에 한함)

※ 방지시설 가동 전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

사. (준공심사) 방지지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 비용의 적정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

- 배출업체는 방지지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지설 설계내역서, 변경허가(신고)증, 가동개시신고서,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(기 신청했던 사업장은 "자체개선 완료보고서"), 전송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센터에 제출

아. (보조금신청) 사업을 완료한 환경전문공사업체는 「보조금 지급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제출

※ 보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공

자. (사후관리) 방지지설 운영상황 정기적 조사 등 관리실태 확인

- 방지지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(측정대행 포함) 결과 및 IoT 관리 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모니터링(반기 1회 이상)

## 7. 유의사항

-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,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작성 양식 준수
- 보완자료 미제출이나 미흡(동일한 보완사항 발생 등)으로 인하여 사업이 반려된 이력이 있는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차기 사업에 참여 제한 예정
- 3년 이내 폐업,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지설 및 IoT 측정기기 미가동시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(붙임 5)

## 8. 기타사항

-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(별도 공지 없음)
- 사업 선정 후 포기 사업장은 추후 대구광역시 보조사업에 사업참여 패널티 부여
- 사업 참여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제출자료 미흡, 준공 불량, 기간 미준수, 시설 내구성, A/S 등에 대한 별도 평가를 통해 차년도(또는 상당기간)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'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름

**9. 신청기간 : '25. 8. 6.(수) ~ 8. 20.(수) 18:00까지**

**10. 신청방법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방문접수**  
(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달서구청 ☎053-667-2597)

**11.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**

- 지원확정 대상업체만 유선연락 : 10월 중

**12. 신청서류**

-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(붙임1)
  - 구비서류 포함
- ※ (변경사항) '25년부터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(개인) 사용가능
- ※ (추가사항)
  -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: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결과 1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가능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 총 1부(노란색 정부화일철), 제출</li><li>▶ 스캔본(PDF파일) 이메일 송부(degec@degec.or.kr)</li><li>▶ 모든 서류 날인시, 인감 도장 사용</li><li>▶ 사본의 경우,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</li></ul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**1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(☎ 053-803-5271) 및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(☎ 053-580-6291), 달서구청(☎ 053-667-259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- 붙임 1.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
- 붙임 2.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한도
- 붙임 3.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사양서
- 붙임 4.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
- 붙임 5. 보조금 회수 기준